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운용방식을 수행기관을 활용한 채용자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고,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여 사회투자기금을 통합·승계하고,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계정에 대한 정의, 기금 조성, 용도, 관리 공무원, 지원 내용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기존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사회적경제계정의 기금 운용계획은 종전의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을 따른다는 경과규정 등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